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6
----------	------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2.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 8. 16.
3.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분야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 나.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복지분야에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할 예정임
- 다. 이에 복지분야 출연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

는 복지분야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우리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통하여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민간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우리시 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필요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할 전담 기관으로
- 시, 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정비취지에 공감하나, 출연기관의 설립시 타당성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출연금액을 제외한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승인토록 하는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출연 현황

- 집행부는 복지분야에서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행 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50플러스재단’)의 기관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다음 표와 같이 편성·지원하고 있음.

<표> 지난 5년간 출연 현황(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35,178	28,732	24,587	20,806	28,440
서울시복지재단	35,178	28,732	24,587	20,806	22,003
50+재단	-	-	-	-	6,437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복지정책과('12~'16년), 희망복지지원과('12~'15년),
자활지원과('13년), 소상공인지원과('13년)

※ 50+재단 출연금: 인생이모작지원과('16년)

<표> 앞으로 5년간 출연 계획(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31,564	33,730	36,589	38,227	38,453
서울시복지재단	22,560	22,223	22,445	22,669	22,895
50+재단	9,004	11,507	14,144	15,558	15,558

※ 중기재정계획과 50+지원 종합계획('16.6.1.) 등에 의거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복지재단은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2003년 설립되어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복지시설 인증에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 까지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 재단 정원은 2004년(31명) 대비 2015년(92명) 기준으로 197% 성장하였으며, 1보좌관, 2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음.

※ 앞으로 ①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단의 기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재검토와 함께 ②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량개발 및 지원 강화 방안, ③ 한정적 자원 대비 복지 수요의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플랫폼 확보 방안, ④ 공공과 민간 간의 연계 협력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자체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복지재단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50플러스재단은 베이비 부머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배경으로 장년층에 대한 인생재설계, 사회참여 등 특화된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바, 장년층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집행부는 복지재단과 서울여성가족재단과의 기능상 중복성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50플러스 재단의 차별성과 유사 기관 간의 연계·조정 방안을 밝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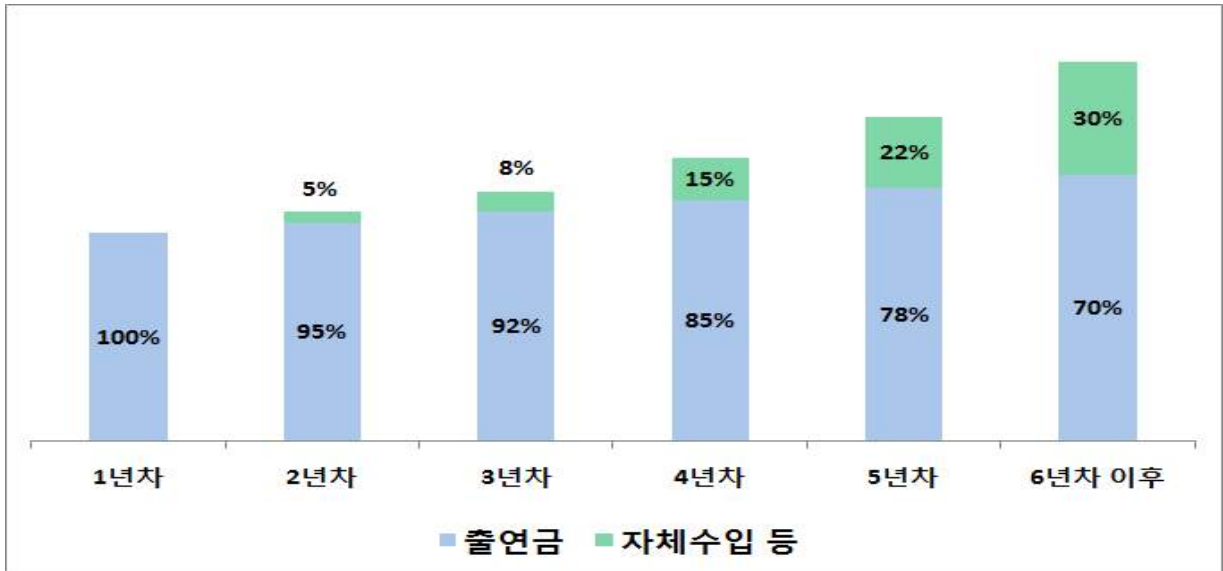
<표> 기존 조직과의 유사중복성

<p>서 복 재</p> <p>을 지 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의 노인복지 및 지역복지사업과 대상자가 일부 중복되거나 장년층 대상 사업은 50+재단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연계·조정 ▶ 시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인생재설계지원 관련 영역 연구는 50+재단 담당으로 역할 분담
<p>서 여 가 재</p> <p>을 성 족 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여성이라는 대상자의 중복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상이(相異) ▶ 여성가족재단은 고용과 경제활동이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나(소득 중심), 50+재단은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기회 제공(소득과 사회공헌 병행)

※ 집행부내 행정위원회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① 민간부분에서 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강의료와 교재 가격과 비교할 때 50플러스 재단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민간 수준의 강의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② 50플러스 재단이 교육 제공, 취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계자로서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③ 50플러스 재단이 퇴직을 앞둔 남성 직장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 여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재단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50플러스재단은 아래 도표와 같이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사업 수익 등) 확보를 통해 2021년 이후에는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7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설정한 바, 앞으로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 같은 계획의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래프> 50플러스 재단 설립 이후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의 목표



※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



3 출연 필요성

-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각 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

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유사 사업의 중복 실시가 없도록 기관 간의 업무상 조정·연계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326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분야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 나.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복지분야에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할 예정임
- 다. 이에 복지분야 출연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복지분야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복지재단

-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우리시 복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통하여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민간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우리시 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필요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50플러스 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할 전담 기관으로

- 시, 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이광훈(☎ 2133-7313)

※ 작성자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 김형도(☎ 2133-7798)